



유의 사항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음

1.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
2.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
4.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

처리 절차

